

대한카누연맹 경기위원회규정

제1조 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연맹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경기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경기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, 검토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

- ① 국내 및 국제카누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경기시설 및 심판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 (조직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, 부위원장 및 위원,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실무부회장 및 전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써 회의에 참석하나 성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.(단, 본 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.)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성원으로 인정할수 있다.
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5.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.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6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0.2.26)

②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0.6.23)